

目 次

1. 1995年度上半期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認結果報告書
및措置計劃 _____ 162
2. 平昌郡農地改良組合區域外農地改良施設管理條例廢
止條例案 _____ 193
3. 平昌郡非指定觀光地管理條例等改正條例案 _____ 197
4. 平昌郡駐車場設置 및 管理條例等改正條例案 _____ 205
5. 平昌郡稅條例等改正條例案 _____ 237
6. 平昌郡稅減免條例等改正條例案 _____ 254
7.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等改正條例案 _____ 259
8. 1995年度平昌郡公有財產管理計劃第1次變更計劃同意
案 _____ 264
9. 1995年度第1回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追加更正
豫算案審查報告書 _____ 268
10. 1995年度第1回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追加更正
豫算案 _____ 273

1995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및조치계획

— '95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 —

현 지 확 인 결 과

평 창 군 의 회

目 次

□ 확인 개요	_____	1
□ 현지확인결과	_____	2
가. 총 괄	_____	2
나. 사업장별 확인결과	_____	3

현 지 확 인 결 과

□ 확인개요

- 주 관 : 평창군의회
- 기 간 : 1995. 5. 1 ~ 5. 9 (9일간)
- 대상사업 : '95년도 군정주요투자사업 57건
- 확 인 반 : 1개반 11명 (의원7,사무보조4명)
 - . 총괄 : 의장
 - . 반원 : 부의장, 이치옥, 박용태, 주태원, 김낙운,
곽문춘의원
 - . 사무보조: 의회사무과직원 4명
- 주요내용
 - . 사업추진의 적정여부 및 예산집행·관리상황
 - 사업장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분석
 - . 주요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운영실태
 - . 지역주민 여론청취 및 의정활동 정보획득

□ 현지확인결과

가. 총괄

○ 확인사업장수 : 총57개대상사업장중 37개사업

(단위 : 개소)

구분 읍면	총 대상 사업장	확 인 사업장	개 보 사 업 선 완 장	확인일자	비 고
계	57	37	18	'95. 5. 1 ~ '95. 5. 9	
평창읍	12	5	3	5 . 9	
미탄면	7	6	3	5 . 1	
방림면	4	3	1	5 . 2	
대화면	7	4	3	5 . 2	
봉평면	5	5	4	5 . 3	
용평면	10	6	2	5 . 3	
진부면	5	4	1	5 . 4	
도암면	7	4	1	5 . 4	

나.사업장별 확인결과

【 평창읍 】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중심)	비고
○ 농어촌마을길 포장공사 (약수리)	○ 진입로 입구주변을 정비 소공원및 주차장 시설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이 요구됨.	
○ 종부교보수공사	○ 보수공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부실공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과 독려가 필요함.	
○ 종합문화예술 회관건립사업	○ 사업장내 급경사면은 우기시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특별관리대책이 필요하고,사업 시행시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하여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가는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됨.	

【 미탄면 】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중심)	비고
○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뒷벌지구)	○ 기반시설내 도로선형은 철저한 사전계획검토를 통하여 블록단위로 개설함이 장래 농산물 반출등에 편리하나 현도로의 선형은 농지 소유.경작자 위주로 개설이 되어 기반시설내 시설의 이용.차량통행등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추후 유사한 사업시행시 보완대책이 요망됨.	
○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회동리)	○ 경지정리지구내 도로포장시 뒷벌지구 기반 시설내 도로포장시기와 상호 적의 조정하여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토록하고 적기에 작물이 파종될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됨.	
○ 미탄지구오지 개발사업 (회동2리)	○ 차선도색을 조기에 완료하고 도로선형의 급경사지와 굴곡이 심한 부분은 안전시설의 설치및 주의.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만약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있는 조치가 필요함.	

【 방 립 면 】

사 업 장 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중심)	비 고
<p>○ '95 계촌 봄마무리경지 정리</p>	<p>○ 경지정리지구내 돌.자갈등이 다량 돌출되는 농지는 지면정지후 1차 복토후 객토를 하여 경작에 어려움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작물이 적기에 파종 될수 있도록 마무리정리및 사후 관리에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됨.</p>	

【 대화면 】

사업장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중심)	비고
○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대화6리)	○ 도수로시설, 지면정지작업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농작물이 적기에 파종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 감독이 요구됨.	
○ 대단위 양돈 단지조성사업 (신2리)	○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단위 오염시설의 설치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농후하며 축분처리 시설만으로는 하계 폭우나 강우시 상수원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고,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익시설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사업 시행에 앞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민의가 적극 수렴된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쓰레기소각로 설치	○ 시설 규모에 비하여 쓰레기소각 능력이 저조한것으로 판단되며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기대기 어려우므로,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군 단위의 대대적인 활용 홍보대책이 필요하며,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임.	

【봉평면】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중심)	비고
○ 봉평도유정비사업	○ 사업지구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해 선 적극적인 협의독려로 조속히 마무리하고 보상완료 지역은 조기착공이 될 수있도록 강력한 추진태세가 요구되며, 소요사업비중 현재 부족사업비에 대한 특별 확보대책도 요구됨.	
○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평촌지구)	○ 경지정리지구내 차량(5t)통행이 어려운 진입 도로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 경지정리지구의 주택방향의 기존 농경지에 용수공급 문제가 야기된 지역에 대한 민원 해소 방안이 요망됨. ○ 지선도수로 관로 미설치(설계제외)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적기에 작물이 파종 될수 있도록 철저한 마무리 대책이 요구됨.	
○ 봉평상수도 시설확장사업	○ 취수원 선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호 합의점을 도출하고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특별대책이 요망됨.	

【봉평면】

사업장명	확 인 요 지 (개선사항중심)	비고
○ 오지개발사업	○ 봉평도읍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조속히 사업을 착공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 면밀한 사업 실행 대책이 필요함.	

【용평면】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중심)	비고
○ 용평복지회관 주차장 포장	○ 주차장으로서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노면 주차선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음.	
○ 오지개발사업	○ 마을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시설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됨.	

【진부면】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중심)	비고
○ 진부고수부지 정비	○ 들망태 공사임을 감안하여 우기전에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수해피해가 없도록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 시행에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됨.	

【도암면】

사업장명	확인요지 (개선사항중심)	비고
<p>○ 병내리 화훼단지조성사업</p>	<p>○ 단지내 기계기설의 가동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상시 고장에 대비할수 있는 관리능력을 배양하는등 사후 시설 지도 관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p>	

다. 현지확인결과 처리계획

○ 확인결과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 집행기관에 통보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 제도개선및 시정요구 사항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조기에 해결될수 있도록 추진.

'95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 지 확인 결과 조치 계획

- 총 대상 사업장 : 57건
- 현지 확인 사업장 : 37건
- 개선·보완 사업장 : 18건

평 창 군

목 차

[평 창 읍]

-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 (사회진흥과, 지역경제과)
- 종부교 보수공사 (건설과)
-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문화공보실)

[미 탄 면]

- '95 봄마무리 경지정리(뒷별지구)사업 (건설과)
- '95 봄마무리 경지정리회동리)사업 (건설과)
- 미탄지구 오지개발 사업 (사회진흥과)

[방 립 면]

- '95 계촌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대 화 면]

- '95 봄마무리 경지정리(대화6리)사업 (건설과)
- 대단위 양돈단지 조성사업 (축산과)
- 쓰레기 소각로 설치 (환경보호과)

[봉 평 면]

- 봉평 도움정비 사업 (사회진흥과)
- '95 봄마무리 경지정리(평촌지구)사업 (건설과)
- 봉평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도시과)
- 오지개발 사업 (사회진흥과)

[용 평 면]

- 용평 복지회관 주차장 포장 (사회진흥과)
- 오지개발사업 (사회진흥과)

[진 부 면]

- 진부 고수부지 정비사업 (사회진흥과)

[도 암 면]

- 병내리 화훼단지 조성사업 (산업과)

현지확인결과조치계획

[평 장 읍]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 농어촌 마을길 포장공사	○ 진입로 입구주변을 정비 소공원 및 주차장 시설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이 요구됨.	○ 본 구간은 곡선도로 구간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진출입 차량과 국도통행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주차장 보다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판단됨. 되는바, 향후 소공원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음.
○ 중부교 보수공사	○ 보수공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부실공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과 독려가 필요함.	○ '95. 4. 17보명종합건설(주)와 계약 및 착공하여 현재 물둘리기 및 가도축조를 완료 하였고, 교각에 대한 물푸기 및 기초보강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계약상 8. 14까지 준공 예정일이나 우기 이전인 6. 30까지 완료할 계획임.
○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 사업장내 급경사면은 우기시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특별관리	○ 토사유출 우려지역 - 옹벽설치(문화회관 설계에 포함된 사업임)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대책이 필요하고,사업 시행시 분진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가는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됨.</p>	<p>기간 : '95.6.5 ~ 6.15</p> <p>물 량 : L=25m, H=3m</p> <p>○ 분진 발생이 우려되는 절개면 - 먼지 차단막 피복</p> <p>※ 현재 미시공 법면 지역 먼지 차단막 피복:2,000㎡</p> <p>- 시공중인 법면은 공사완료 후 잔디 식재</p> <p>- 공사중 분진 발생은 수시로 물을 뿌려 최대한 먼지 발생을 억제하고</p> <p>-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피해발생을 사전 예방 하겠음.</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 '95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릿벌지구)</p>	<p>○ 기반시설내 도로선형은 철저한 사전계획 검토를 통하여 불력단위로 개설함이 장래 농산물 반출등에 편리하나 현 도로의 선형은 농지소유·경작자 위주로 개설이 되어 기반시설내 시설의 이용,차량통행 등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추후 유사한 사업 시행시 보완대책이 요망됨.</p>	<p>○ 경작농로를 불력단위로 개설할 경우 농산물 반출은 편리하나 토지의 편입면적이 편중됨으로 인해 민원 발생의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지역여건에 따라 통행에 불편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회동리)</p>	<p>○ 경지정리지구내 도로포장시 뒷별지구 기반시설내 도로포장 시기와 상호 적의 조정하여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토록하고 적기에 작물이 파종될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됨.</p>	<p>○ 뒷별지구와 경지정리지구의 도로포장시기는 상호 조정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뒷별지구포장계획 6. 10~15) (경지정리사업포장계획 6. 20 ~ 30)</p>
<p>○ 미탄지구 오지개발 사업 (회동2리)</p>	<p>○ 차선도색을 조기에 완료하고 도로선형의 급경사지와 굴곡이 심한 부분은 안전시설의 설치 및 주의,경고판을 설치하여 만약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p>	<p>○ '95. 5. 22차선도색 완료 ○ 도로교통 안전시설 및 부대 시설은 '96오지개발사업시 예산반영 설치코자 함</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 '95계촌 봄마무리 경지정리</p>	<p>○ 경지정리 지구내 돌, 자갈등이 다량 돌출되는 농지는 지면 정지 후 1차 복토후 객토를 하여 경작에 어려움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작물이 적기에 파종될 수 있도록 마무리 정리 및 사후관리에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됨.</p>	<p>○ 돌자갈이 다량 돌출된 농지는 장비 및 인원을 투입하여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기초치 하였음.</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 '95봄마무리 경 지 정리사업 (대화6리)</p>	<p>○ 도수로 시설, 지면정지 작업등을 조속히 마무 리 하여 농작물이 적기 에 파종될수 있도록 하 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 도록 각별한 지도·감 독이 요구됨.</p>	<p>○ 5. 17일 도수로설치 및 5. 19일 물정지 100% 완료 하여 모내기에 지장이 없 도록 조치하였음.</p>
<p>○ 대단위 양돈단지 조성사업 (신2리)</p>	<p>○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 단위 오염시설의 설치 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농후하며 축분처리 시 설 만으로는 하계 폭우 나 강우시 상수원 오염 을 근본적으로 해소하 기 어렵고,공익의 목 적이 아닌 사익시설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 려운바 사업시행에 앞 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민의가 적극 수</p>	<p>○ 본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으로 부터 6KM 상류에 위치 하여 수도법상 제한구역이 아니며, 시설 규모에 적정 한 오염 방지시설이 동시에 갖추어 질경우 제한 사유는 없는것으로 판단됨.</p> <p>○ 또한 WTO대응을 위한 경쟁 력 향상을 위하여는 양돈 산업의 전업규모 단지화 조 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가동중인 통풍식 축분 발효시설은 슬러리식 돈사 로 분뇨는 지하에 매설된</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 쓰레기 소각로 설치</p>	<p>럼된후 추진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됨.</p> <p>○ 시설규모에 비하여 쓰레기 소각능력이 저조한것으로 판단되며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기대키 어려우므로,효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군단위의 대대적인 활용 홍보대책이 필요하며, 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임.</p>	<p>송출관을 통하여 저장 탱크에 전량 저장후 톱밥과 혼합 발효 처리시킴으로써 양돈장 외부로 전척 방출되지 않는 시설임.</p> <p>○ 따라서 주민들에게 타시설 견학등을 통하여 이해를 시킴과 동시에 종합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시 본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오염을 철저히 방지해 나아갈 계획임.</p> <p>○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현재의 소각시설은 시험가동중이므로 소각능력 정밀진단 실시후 적합관정시 정상가동 예정이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 - 대기 배출가스 검사 실시 <p>○ 효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분리수거 홍보 및 지도단속을</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강화 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전단 제작배부(6월중 6,000매제작) - 내고장 소식지 게재 및 환경게시판 활용 홍보 - 1일 1회 지도단속 실시 <p>○ 또한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장비도입 및 시설을 보완 확충해 나아갈 계획 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기 : '95 하반기 - 사 업 비 : 30백만원 ('95추경시 확보)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투입용 콘베어 설치(1기) · 방지사설 보온을 위한 증축(13평) · 소각시설 가동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열관리 자격중 소각자 1명)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 봉평 도읍정비 사업</p>	<p>○ 사업지구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해선 적극적인 협의 독려로 조속히 마무리 하고 보상 완료지역은 조기 착공이 될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태세가 요구되며, 소요사업비중 현재 부족사업비에 대한 특별 확보대책도 요구됨.</p>	<p>○ 사업지구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관하여는 계속적 협의 독려 진행중으로 '95.6월말까지 보상 협의 완료할 계획이며, 시설 공사는 '95.6.1 착공하여 '95년내 마무리할 계획임.</p>
<p>○ '95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평촌지구)</p>	<p>○ 경지정리지구내 차량(5T)통행이 어려운 진입 도로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p> <p>○ 경지정리 지구의 주택방향의 기존 농경지에 용수공급 문제가 야기된 지역에 대한 민원 해소방안이 요망됨.</p>	<p>○ 진입로 도로폭이 5.0M로 설치되어 있으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7.5M로 연장 시공조치 하였음.</p> <p>○ 본 농경지는 당초 논이었으나 3년동안 밭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논농사로 사용할 경우 기존 용수로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조치 하였음.</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 봉평상수도 시설 확장사업</p> <p>○ 오지개발사업</p>	<p>○ 지선 도수로 관로 미 설치(설계제외)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적기에 작물이 파종 될수 있도록 철저한 마무리 대책이 요구됨.</p> <p>○ 취수원 선정에 따른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호 합의점을 도출하고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특별 대책이 요망됨.</p> <p>○ 봉평도읍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조속히 사업을 착공하고,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 면밀한 사업 실행대책이 필요함.</p>	<p>○ 지선용수로 수로관 미설치 부분은 예산부족으로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향후 문제점이 발생시는 예산확보 추진토록 하겠음.</p> <p>○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종합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음.</p> <p>○ 봉평지구 오지개발사업 남안교 가설공사는 예산의 과다한 소요로 계속비사업 승인을 득한 후 오지개발 사업 격년차 투자 3년차 사업으로 '9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95.5.25일 현재 계속비 사업승인 절차 진행중에 있음.</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 용평 복지회관 주차장 포장</p> <p>○ 오지개발 사업</p>	<p>○ 주차장으로서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노 면 주차선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음.</p> <p>○ 마을 영농조합법인 설 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시설 이 적기에 활용될수 있 도록 대책이 요구됨.</p>	<p>○ '95주민숙원사업비 잔액을 투자 차량 주차선을 확정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차량 : 48대 · 대형차량 : 4대 · 시 공 일 : '95. 5. 22 <p>○ '95. 5. 26일 현재 속사 영농조합법인 및 백옥포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기 신청중으로 등기완료에 따라 사업자 지정 승인을 특한후 민간자본 이전으로 사업추진계획임.</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 진부 고수부지 정비</p>	<p>○ 돌망태 공사임을 감안 하여 우기전에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수해 피해가 없도록 하고, 부실 공사로 인한 민원 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 시행에 철저한 지도 감 독이 요구됨.</p>	<p>○ 돌망태 공사를 '95. 5. 25 일 완공하고 범면 줄떼 시공중으로 우기전에 모든 사업이 완공되도록 할 계획 임.</p>

사. 업. 명	확 인 요 지	처 리 계 획
<p>○ 병내리 화훼단지 조성사업</p>	<p>○ 단지내 기계시설의 가동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상기고장에 대비할수 있는 관리 능력을 배양 하는 등 사후 시설 지도관리 대책이 강구 되어야함.</p>	<p>○ 본사업은 '95. 6. 30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계설치후 수시 가동 점검하여 이상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중이며, 공사완료후 시공업체의 기술자 1인을 기계시설 가동에 대한 지도 및 고장 대비, 사후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95. 12. 30(6개월) 까지 상주 근무토록 조치 하였음.</p>

평창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 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19
----------	-----

제출년월일 : 1995. 3.
제 출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본조례는 상위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2 제2항,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아 제정된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3조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위배되어 제정되었기에 폐지 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 가. 농지개량계 규약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준칙에 따라 작성한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조례에서 정하는것은 위법함(제6조, 별표)
- 나. 농지개량계의 해산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것은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22조에 위배됨. (제14조)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 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평창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2 제2항

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74. 4. 4>

○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

④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농지개량계의 조직, 운영 및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75. 12. 10>

○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3조 제2항

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량계를 조작한 때에는 그 개량계를 대표하는 자(이하 "개량계장"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개량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 3. 14>

1. 규약(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준칙에 따라 작성한 것)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삭제 <82. 7. 10>
5. 구역도

○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22조

제22조(개량계의 해산) 군수는 개량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개량계를 해산하게 할 수 있다.

1. 물리지역이 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 편입되거나 도시계획 또는 공업단지조성등 기타 발생으로 개량계의 물리면적이 감소되어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고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
3. 내지 6. 삭제<82. 7. 10>

평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2
----------	-----

제출년월일 : 1995. 4.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비지정관광지내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쓰레기수거 및 뒷자리정리등 관리비용, 의 현실화와 증량제 시행에 따른 쓰레기봉투 구입등 추가 부담요인 발생되어 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 "평창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10조(수수료) 제2항 별표 1개정

대 인	소 인
1,000원	500원

⇒

대 인	소 인
2,000원	1,000원

- 제10조(수수료) 제2항 단서의 개정

『"평창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수수료 요율표』를 "평창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로

- 제11조(수수료의 징수) 제1호 단서의 개정

"평창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를 "평창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로

○ 제17조(준용)의 개정(조문삽입)

"평창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삽입

○ 제15조(보상)의 삭제

일정량 이상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제10조 제2항(별표1) 기준에 준하여 폐기물처리 비용을 보상한다.

평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평창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수수료
요율표"를 "평창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1조 제1호중 "평창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를 "평창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준용) 이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폐기물수집수수
료등징수조례", "평창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및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수료의 요율표(제10조제2항 관련)

(1일 기준)

대 인	소 인
2,000원	1,000원

비 고 : 윗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 인 : 13세이상인 자
2. 소 인 : 6세이상 13세미만인 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0조(수수료) ① < 생략 ></p> <p>② 수수료는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 소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되 금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u>평창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u>"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수수료 <u>요율표에 의한다.</u></p>	<p>제10조(수수료) ① < 현행과 같음 ></p> <p>② "<u>평창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u>"</p>
<p>제11조(수수료의 징수) < 본문생략 ></p> <p>1. 수수료는 비지정관광지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청소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u>평창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u>"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p>	<p>제11조(수수료의 징수) < 현행과 같음 ></p> <p>1. "<u>평창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u>"</p>
<p>제15조(보상). 일정량 이상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제10조 제2항 [별표1]기준에 준하여 폐기물처리비용을 <u>보상한다.</u></p>	<p>< 삭제 ></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p>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및 평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를 준용한다.</p>	<p>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평창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부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및 "평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를 준용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의 요율표(제10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대 인</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소 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원</td> </tr> </tbody> </table> <p>비 고 : 윗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 인 : 13세이상인 자 2. 소 인 : 6세이상 13세미만인 자 	대 인	소 인	1,000원	500원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의 요율표(제10조제2항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1일기준)</p>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대 인</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소 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원</td> </tr> </tbody> </table> <p>비 고 : 윗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 인 : 13세이상인 자 2. 소 인 : 6세이상 13세미만인 자 	대 인	소 인	2,000원	1,000원
대 인	소 인								
1,000원	500원								
대 인	소 인								
2,000원	1,000원								

관계 법령 발췌서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2. "일반폐기물"이라 함은 특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12조 (일반폐기물관리구역) 전국을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일반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1
----------	-----

제출년월일 : 1995. 4.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현실에 부적합한 부분이 많아 이를 조정하고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등을 형평성 있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1일주차권과 월 정기주차권 폐지(제3조) [별표 1]

- 소형차 1일주차 30분단위 환산시 : 현행 250원 × 24매(12시간) = 6,000원.
 - 소형차 1일주차권 구입시 : 현행 3,000원.
 - 소형차 월 정기주차권 구입시 : 현행 월 56,000원 ÷ 30일 = 1일 1,866원.
- ※ 위와 같이 30분단위로 주차하는 차량의 주차료 부담이 1일주차료와 정기주차료보다 가중되므로 주차료간의 형평성 결여.

나. 주차요금 인상 [별표 1]

- 1급지 소형차량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
- 2급지 소형차량 8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

다. 주차요금의 경감 (신설)

-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경감.
- 승용차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경감.
- 주차장 이용차량이 2시간 초과주차시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가산.

라. 임의주차 및 체납자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

- 임의 주차의 경우 : 주차요금의 4배.
- 주차요금과 가산금 체납자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주차수요 밀집시간대에 효율적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주차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10:00 ~ 11:00 주차시에는 주차요금의 50% 가산.

마.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해야 할 금액조정(제6조)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시 현행 도로점용료 또는 군재산 대부료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 주차장 면적에 개별지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5/100를 도로점용료로 납부할 경우
 - 개별지가가 높아 도로점용료를 과다 납부하므로 인건비 계상도 어려운 실정에 직면하게 되어 유료주차장 위탁관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도로점용료 또는 군재산 대부료를 산정하여 그 산정가액에 아래의 요율로 누진적용 징수토록하여 위탁관리 단체(자)의 후생복지대책 및 불법주정차 금지로 인한 교통질서 확립에 일익토록 하고자 함.
 - 주차면수 100면 이하 _____ 50% 적용
 - 주차면수 101면~150면 이하 _____ 60% 적용
 - 주차면수 151면~200면 이하 _____ 70% 적용
 - 주차면수 201면이상 1면초과시마다 _____ 1%추가 징수하되 100%초과징수하지 않는다.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신설한다.

㉔군수가 설치한 노상,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1. 주차장 이용차량이 2시간 초과 주차시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를 가산.
2. 주차수요 밀집시간대인 오전 10:00 ~ 11:00 사이에 주차시에는 주차요금의 50% 가산.
3.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
4. 승용차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경감.

㉕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주차장 이용방법을 따르지 않고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

1. 주차장설치("위탁관리자 포함")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하지 아니하고 임의 주차한 경우 : 주차요금의 4배를 징수.
2. 제1항 및 제2항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징수.

㉖제1항내지 제3항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제2항중 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 제1호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수의 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군재산 대부료를 산정하여 아래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 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 주차면수별 요율표

- 주차면수 100면 이하 _____ 50%
- 주차면수 101~150면 이하 _____ 60%
- 주차면수 151~200면 이하 _____ 70%
- 주차면수 201면이상 1면초과시마다 _____ 1%추가 징수하되 100%초과 징수하지 않는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㉔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수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을 환불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이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종교시설, 전시시설, 통신촬영시설, 창고시설중 설치대상 제외건축물.

- 상업지역 : 100㎡ 미만
 - 상업지역 이외지역 : 330㎡ 미만
2. 근린생활 시설중 설치대상 제외건축물
- 상업지역 : 200㎡ 미만
 - 상업지역 이외지역 : 400㎡ 미만
3. 기타 건축물

- 시설면적 250㎡당 1대
- 설치대상 제외건축물
 - 상업, 일반주거, 준주거, 준공업지역 : 400㎡미만
 - 기타지역 : 800㎡미만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주차장 정비지구에 건축하는 주차장전용건축물의 용적을 및 높이) 영 제2조제 2항의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용적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80이하
2. 용적을 : 1300%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60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경우 가정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대지가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할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의 폭.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법 제19조제4항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받는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과 동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노상,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에 의거 무상사용기간은 유료주차장의 경우는 별표1의 급지요금 기준으로 나누어 결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법 제19조의3항에 의거 일반에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일반의 이용시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6조제1항의 시설물로서 40면 이상일때 신고후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일반에게 이용을 제공할 수 있다.
2. 이용 제공방법등은 주차장관리조례의 노상, 노외주차장 운영 관리방법에 따라 제공토록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중 "영 제11조의2제2항"을 "영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중 "법 제30조제2항의"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별표1], [별표7], [별표8]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5] 및 [별표6]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단위 : 원)

구 분	차 종 별	1회주차권	비 고
		1구획당30분기준	
1급지	승합자동차이상	600	
	승용자동차	300	
2급지	승합자동차이상	300	
	승용자동차	100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가. 4월 ~ 10월 : 08:00 ~ 20:00
 - 나. 11월 ~ 3월 : 09:00 ~ 19:30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하되 평창군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급지:읍·면소재지, 2급지 비소재지)
4. 주차요금은 평창군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과징금가감기준

(제19조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위 반 정 도	기 본 과징금	가감후과징금	
			신고업소	허가업소
1. 관리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한 때	위반시	250		250
	위반상태가 1개월 이상			300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위반시	100	90	100
	2회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의 50%이상		100	110
	3회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의 100%이상		110	120
3.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	위반시	50	45	50
	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50	60
4.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위반시	50	45	55
	2회이상 위반시		50	60
5.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위반시	50	45	55
	2회이상 위반시		50	60
6.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개선명령 1회 위반시	50	45	55
	개선명령 2회 위반시		50	60
7.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위반시	50	45	55
	2회이상 위반시		50	60

·비고 : 위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제20조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별	규 모	급 지 별	과 태 료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바닥면적 500㎡미만	1 급 지	90
		2 급 지	80
	바닥면적 500㎡이상	1 급 지	100
		2 급 지	90
2.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바닥면적 500㎡미만	1 급 지	90
		2 급 지	80
	바닥면적 500㎡이상	1 급 지	100
		2 급 지	90
3.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자.	바닥면적 500㎡미만	1 급 지	90
		2 급 지	80
	바닥면적 500㎡이상	1 급 지	100
		2 급 지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자.	바닥면적 500㎡미만	1 급 지	40
		2 급 지	30
	바닥면적 500㎡이상	1 급 지	50
		2 급 지	40
5. 정당한 사유없이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때	바닥면적 500㎡미만	1 급 지	40
		2 급 지	30
	바닥면적 500㎡이상	1 급 지	50
		2 급 지	40

6. 주차장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바닥면적	1 급 지	40
	500㎡ 미만	2 급 지	30
	바닥면적	1 급 지	50
	500㎡ 이상	2 급 지	40
7. 주차장 시설 및 업무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바닥면적	1 급 지	40
	500㎡ 미만	2 급 지	30
	바닥면적	1 급 지	50
	500㎡ 이상	2 급 지	4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정안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㉔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p> <hr/> <p>㉕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p> <p>1.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㉔군수가 설치한 노상,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p> <p>1. 주차장 이용차량이 2시간 초과 주차시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를 가산.</p> <p>2. 주차수요 밀집시간대인 오전 10:00~11:00사이에 주차시에는 주차요금의 50% 가산.</p> <p>3.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 경감.</p> <p>4. 승용차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 경감.</p> <p>㉕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주차장 이용방법을 따르지 않고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p> <p>1. 주차장설치("위탁관리자 포함")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하지 아니하고 임의 주차한 경우 : 주차요금의 4배를 징수.</p> <p>2. 제1항 및 제2항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주차요</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한다.</p> <p>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30분 단위로 발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p> <p>④ < 신설 ></p> <p>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㉔<생략></p>	<p>금의 4배의 가산금을 징수.</p> <p>④ 제1항내지 제3항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㉔<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2.5%;">구분</th> <th style="width: 12.5%;">선정방법</th> <th style="width: 12.5%;">납부하여야 할 금액</th> <th style="width: 12.5%;">납부방법</th> </tr> </thead> <tbody> <tr> <td>제1항제1호</td> <td>군수가 정하는 방법</td> <td>군수가 정하는 금액</td> <td>군수가 정하는 방법</td> </tr> <tr> <td>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td> <td>수 의 개 약</td> <td>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재산대부료 상당액</td> <td>3개월 단위로 선납</td> </tr> </tbody> </table>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	수 의 개 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재산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2.5%;">구분</th> <th style="width: 12.5%;">선정방법</th> <th style="width: 12.5%;">납부하여야 할 금액</th> <th style="width: 12.5%;">납부방법</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재산대부료를 산정하여 아래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재산대부료를 산정하여 아래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	수 의 개 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재산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																						
.....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재산대부료를 산정하여 아래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15%;">구 분</th> <th style="width:25%;">선 정 방 법</th> <th style="width:20%;">납부하여야 할 금액</th> <th style="width:40%;">납 부 방 법</th> </tr> <tr> <td>기타의경우</td> <td>경 정 계 약</td> <td>입 찰 가 격</td> <td>3개월 단위로 선납</td> </tr> </table>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기타의경우	경 정 계 약	입 찰 가 격	3개월 단위로 선납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15%;">구 분</th> <th style="width:25%;">선 정 방 법</th> <th style="width:20%;">납부하여야 할 금액</th> <th style="width:40%;">납 부 방 법</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기타의경우	경 정 계 약	입 찰 가 격	3개월 단위로 선납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p>< 신설 ></p> <hr/> <p>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②</p> <p>· 주차권 다음 기준에 의하여</p> <p>.....</p> <p>1. <생략></p> <hr/> <p>2. <생략></p> <hr/>								<p>※ 주차면수별 요율표</p> <hr/> <p>- 주차면수 100면 이하 50%</p> <p>- 주차면수 101~150면 이하 60%</p> <p>- 주차면수 151~200면 이하 70%</p> <p>- 주차면수 201면이상 1면초과시마다 —1%추가 징수하되 100% 초과 징수하지 않는다.</p> <p>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②</p> <p>·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p> <p>금을</p> <p>1. <삭제></p> <hr/> <p>2. <삭제></p> <hr/>																							

신 · 구조문 대비표

헌	행	기	정	안
<p>제13조(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개발 구역안의 주차장설치)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 재개발사업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그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인면적에서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당해 건축물의 인면적에서 제외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로 확보하여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단수가 1대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한다.</p>	<p>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교시설, 전시시설, 통신촬영시설, 창고시설중 설치대상 제외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지역 : 100㎡ 미만 · 상업지역 이외지역 : 330㎡ 미만 2. 근린생활 시설중 설치대상 제외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지역 : 200㎡ 미만 · 상업지역 이외지역 : 400㎡ 미만 3. 기타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250㎡당 1대 · 설치대상 제외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 일반주거, 준주거, 준공업지역 : 400㎡미만 - 기타지역 : 800㎡미만 			

신 · 구조문 대비표

행	정
<p>제14조(상업지역의 특정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인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영 제6조제1항1호 및 제2호에 정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은 그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별표 6에서 정한 인면적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p>	<p>제14조(주차장 정비지구에 건축하는 주차장전용건축물의 용적율 및 높이) 영 제2조제2항의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용적율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폐율 : 100분의 80이하 2. 용적율 : 1300%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60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경우 가정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p>가) 대지가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할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p> <p>나) 대지가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의 폭.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하"공동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p> <p>②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생략 ></p> <p>④< 생략 ></p>			<p style="text-align: center;"><u>경우에는 1.8배로 한다.</u></p> <p>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법 제19조제4항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p> <p>②< 삭제 ></p> <p>③< 삭제 ></p> <p>④< 삭제 ></p>
	<p>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②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①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받는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노상,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행	행	계	정	안
<p>②영 제6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 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 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 로 한다.</p>	<p>제17조(조입주차장의 설치기준)①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조입주차 장은 당해 건축물의 기준 주차대수 5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면 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조입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 으나, 그 위치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시까지 군수가 지정한다.</p>	<p>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법 제19조의3항에 의거 일 반에의 이용에 제공 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일반의 이용시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영 제10조제1항에 의거 무상사용기간은 유료주차장의 경우는 별표1의 급지요금 기준으로 나누어 결정한다.</p>	<p>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법 제19조의3항에 의거 일 반에의 이용에 제공 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일반의 이용시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제1항의 경우 다음 사항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배치 및 출입차량 동선 2. 전체주차장 평면도 및 주차동선 3. 조입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주차배치계획등) 	<p>1. 영 제6조제1항의 시설물로서 40면 이상일때 신고후 신고필증 을 교부받고 일반에게 이용을 제공할 수 있다.</p> <p>2. 이용 제공방법등은 주차장관리조례의 노상, 노외주차장 운영 관리방법에 따라 제공토록 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4. <u>조업주차면을 다른 주차면과 출입구등을 별도 사용, 관리 할 수 있는 계획</u></p> <p>제18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생략 ></p> <p>제19조(과징금 처분)①영 제11조의2 제2항의</p> <p>.</p> <p>제20조(과태료 처분)①법 제30조 제2항의</p> <p>.</p>	<p>제18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삭제 ></p> <p>제19조(과징금 처분)①영 제17조제2항의</p> <p>.</p> <p>제20조(과태료 처분)①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p> <p>.</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단위 : 원)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단위 : 원)										
구 분	차 종 별	1회주차권	1 일 주차권	월 정 기 주 차 권		구 분	차 종 별	1회주차권	비 고							
		1구회당 30 분단위마다		주 간	야 간			1구회당30분기준								
1급지	보통차량	500	6,000	75,000 (112,500)	56,000	1급지	승합자동차이상	600								
	소형차량	250	3,000	56,000 (84,000)	42,000		승용자동차	300								
2급지	보통차량	200	2,400	30,000	22,000	2급지	승합자동차이상	300								
	소형차량	80	1,100	20,000	15,000		승용자동차	100								
※ ()는 노상주차장 정기권(제3조제1항 관련) 1. < 생략 > 2. < 생략 >						1. < 현행과 같음 > 2. <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 생략 > · (도심, 부도심, 지하철 연계 주차장 등)		3. < 현행과 같음 > · (1급지:음·민소재지, 2급지 비소재지)		
4. < 생략 >		4. < 현행과 같음 >		
5. < 생략 >		5. < 현행과 같음 >		
[별표5] < 생략 >		[별표5] < 삭제 >		
[별표6] < 생략 >		[별표6] < 삭제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7] 과 정 금 가 감 기 준 (제19조 관련) (단위 : 만원).					[별표 7] 과 정 금 가 감 기 준 (제19조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위 반 정 도	기 본 과 정 금	가 감 후 과 정 금		위 반 행 위	위 반 정 도	기 본 과 정 금	가 감 후 과 정 금	
			신 고 업 소	허 가 업 소				신 고 업 소	허 가 업 소
1. < 생략 >					1. < 현행과 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 같음 >				
3. < 생략 >					3. < 현행과 같음 >				
4. < 생략 >					4. < 현행과 같음 >				
5. < 생략 >					5. < 현행과 같음 >				
6. < 생략 >					6. < 현행과 같음 >				
7. < 생략 >					7. < 현행과 같음 >				
8. < 생략 >					8. < 삭제 >				
< 신설 >					비고 : 위표에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 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8] <u>과태료 부과 기준</u> (제20조 관련) (단위 : 만원)				[별표 8] <u>과태료 부과 기준</u> (제20조 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별	규모	급지별	과태료	위반행위별	규모	급지별	과태료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 주차장을 설치한 자.	바닥면적 500㎡ 미만	1급지	90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 주차장을 설치한 자.	바닥면적 500㎡ 미만	1급지	90
		2급지	80			2급지	80
	바닥면적 1,000㎡ 이하	1급지	100		바닥면적 500㎡ 이상	1급지	100
		2급지	90			2급지	90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기한 자.	바닥면적 500㎡ 미만	1급지	35	2.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바닥면적 500㎡ 미만	1급지	90
		2급지	30			2급지	80
	바닥면적 1,000㎡ 이하	1급지	40		바닥면적 500㎡ 이상	1급지	100
		2급지	35			2급지	90
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기한 자.	바닥면적 2,000㎡ 미만	1급지	45	3.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자.	바닥면적 500㎡ 미만	1급지	90
		2급지	50			2급지	80
	바닥면적 2,000㎡ 이하	1급지	50		바닥면적 500㎡ 이상	1급지	100
		2급지	45			2급지	90

신 · 구조문 대비표

권	행	기	정	안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자.	바 닥 면 적 500㎡미만	1급지	40	
			2급지	30	
		바 닥 면 적 500㎡이상	1급지	50	
			2급지	40	
		5. 정당한 사유없이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때	바 닥 면 적 500㎡미만	1급지	40
				2급지	30
			바 닥 면 적 500㎡이상	1급지	50
				2급지	40
	6. 주차장의 표지불 설치하지 아니한 자.	바 닥 면 적 500㎡미만	1급지	40	
			2급지	30	
		바 닥 면 적 500㎡이상	1급지	50	
			2급지	40	
	7. 주차장 시설 및 업무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바 닥 면 적 500㎡미만	1급지	40	
			2급지	30	
바 닥 면 적 500㎡이상		1급지	50		
		2급지	40		

관계법령발췌서

■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설비지구) ㉔주차장설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패지) ①노상주차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중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기타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8조2(노상주차장에서 의 주차행위 제한) 누구든지 노상주차장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3.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행위
4.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의 4배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공용제한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공용을 제한하거나 자동차별 노상주차장의 주차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노외주차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주차장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 정비계획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구조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설치를 완료한 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주차장이 그 설치 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16조(중지등의 신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용을 중지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등)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보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8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표시)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당해 건축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상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3(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②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과 당해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일반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2조제5항.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 제1항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시장.군수"로 본다.

제25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도시계획구역외에 있어서의 적용)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2. 제12조제5항(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3. 제12조제2항(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중지 또는 금지한 자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3. 제18조제1항(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주차장법시행령

제2조(주차장정비지구)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율 : 1천500퍼센트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로 하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대지가 폭12미터미만 도로에 접할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폭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할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
도로의 폭 배. 다만, 비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8대의 규모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로 한다

③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등(이하 "시설물설치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대수
2. 부설주차장의 각 시설물 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3. 부설주차장의 형태
4. 부설주차장 설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공사착수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기존의 주차장으로서 새로운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설계도서(기존의 주차장으로서 새로운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를 기재한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4.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제9조(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등)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설치허가증을 받기전에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 ①시장·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준공검사필증(건축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가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교부할 때에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중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설치비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의 당해 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함에 있어 당해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이 주차난이 심각하거나 기타 당해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주차장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긴급자동차"라 함은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1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상·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법

제18조(건축물의 사용검사) ① 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사감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건폐율) 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

1. 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2.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3.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4.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5.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6.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도시계획법령 및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하여 세분된 지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한다.

③ 도시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1항, 제33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평창군세조례증기정조례안

의안 번호	225
----------	-----

제출년월일 : 1995. 5.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94년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군세조례증 개정되어야 할 조항과 조례내용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내용과 연관되는 군세조례 조항 전부를 발췌 개정함.
- 나. 균등할 주민세의 세액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제15조제1항제2호)
- 다. 균등할 주민세의 납기가 '94 지방세법 개정시 법에 명문화 되어 조례규정 삭제(제24조)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동조제 1항중 "특별징수 의무자가" 다음에 "법 제26조의 2 및"을 삽입하고,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기한"으로 "납기전"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납기한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의"를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월이내의"로,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동조 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 한의 연장"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으로,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또다시 기한의 연장"으로, "납기한의 연장 기한내에"를 "연장된 기한내에"로, "3개월"을 "3월"로,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다시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5항중 "납기한"을 "신고납부기한"으로,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의 만료될 때부터 징수한다"를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징수유예신청)"을 "(징수유예등의 신청)"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징수유예를"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을"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1,500원(군지역은 800원)"을 "1,800원(군지역은 1,000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		500,000원

구	분	세	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의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총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법인		50,000원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를 "비과세 적용자"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이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

면 받고자 하는 자는"을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하는자"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관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75로 한다.

제22조중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1조중 "법 제202조제1항"을 "법제9조의2"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중 "제29조 내지 제32조의"를 "제29조 내지 31조의"로 한다.

제49조 본문중 「"법 제234조의14제2항제6호에서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같이 신설 한다.

②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관사업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를 "법 234조의 12"로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제53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를 "비과세 적용자"로 하고, 동조중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3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를 "비과세 적용자"로 하고, 동조중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하며, 동조 제5호중 "비과세 및 감면사유"를 "비과세 사유"로 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95. 1. 1)	개 정
<p>제7조(납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법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 기한의 ----- ----- 기한이 만료되기전 ----- -----</p> <p>② ----- 기한의 연장 -----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월 이내의 ----- 연장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 ----- 또다시 기한의 연장 ----- ----- 연장된 기한내에 ----- ----- 3월 ----- ----- 다시 연장할 수 있다.</p>

현 행 ('95. 1. 1)

개 정

④ 생략

⑤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
부터 징수한다.

제9조 (징수유예신청) 군세에 관하여 징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15조 (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인 : 800원
- 2. 법인

구 분	세 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 <u>액 (대통령령이 정하는</u> <u>날 현재의 자본금액</u>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 다. 이하 이조에서 같 다) 100억원을 초과하 는 법인으로서는 <u>군내에</u> <u>종업원 (대통령령이 정</u> <u>하는 종업원을 말한다</u>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 는 사무소 또는 사업	500, 000원

④ 현행과 같음

⑤ 신고납부기한의 -----
---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
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징수유예등의 신청) -----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을 ---
-----.

제15조 (세율) ① -----

- 1. ----- : 1, 000원
- 2. -----

구 분	세 율
----- -- (과세기준일 현재의 <u>자본금액) -----</u> ----- ----- ----- ----- <u>과세</u> <u>기준일 현재 당해 사</u> <u>무소 또는 사업소 (이</u> <u>하 이 조 에서 "사무</u> <u>소등"이라 한다)의 종</u> <u>업원 (법 제243조의 제</u>	

헌 행 ('95. 1. 1)

개 정

구 분	세 율	구 분	세 율
<p>소틀 둔 법인</p>		<p>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법인</p>	
<p>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틀 둔 법인</p>	<p>350,000원</p>	<p>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p>	
<p>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틀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틀 둔 법</p>	<p>200,000원</p>	<p>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p>	

현 행 ('95. 1. 1)

구 분	세 율
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 액 3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 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 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 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② (생략)

제16조(납기등) ①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
며, 소득할은 수시 부과한다.

② 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9조의3의 규
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개 정

구 분	세 율
법인	
-----	-----
-----	-----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 가 100인 이하인 법인 과 -----	

-- 과세기준일 현재 당 해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 는 법인	
-----	-----

② (현행과 같음)

< 삭제 >

현 행 ('95. 1. 1)	개 정
<p>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계기 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중기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p> <p>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p> <p>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p>	<p>제17조(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삭제)</p> <p>6. -----</p> <p>-----</p> <p>7. -----</p> <p>-----</p>
<p>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 법 제184조의3 제2항제7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1. ~ 4.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p>	<p>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p>

현 행 ('95. 1. 1)	개 정
<p>제22조(중과대상지역)법 제188조제1항제2호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p>	<p>제22조(중과대상지역)법 제188조제1항제2호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 -----.</p>
<p>제24조(증기에 대한 신고의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증기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취득가격, 과세사실발생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기를 취득한 때 2. 증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증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증기가 과세증기로 된 때 5. 과세증기가 비과세증기로 된 때 	<p>< 삭제 ></p>
<p>제31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법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p>	<p>제31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법 제9조의2의 ----- ----- ----- -----</p>

현 행 ('95. 1. 1)	개 정
<p>년월일, 피해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2조(종군자의 감면신청) ①영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종군·동원 또는 전사·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도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p>	<p>-----</p> <p>-----</p> <p>-----</p> <p>(삭제)</p> <p>-----</p>
<p>제33조(감면결정 통지)군수는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3조(감면결정 통지)군수는 제29조 내지 제31조의 -----</p> <p>-----</p> <p>-----</p> <p>-----</p> <p>-----</p>
<p>제49조(구관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법 제234조의14제2항제6호에서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경하</p>	<p>제49조(구관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p>

현 행 ('95. 1. 1)	개 정
<p>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토지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1. ~ 4. (생략) ② (신 설)</p>	<p>1. ~ 4. (현행과 같음) ② 법제 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관 사업용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p>
<p>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 (생략) ② 법 제234조의12내지 제234조의14의 규 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p>	<p>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34조의12의 ----- ----- 비과세 받고자 ----- ----- ----- ----- -----</p>
<p>제5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 항)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그 신고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 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5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 ----- ----- 비과세 받고자 ----- ----- ----- ----- -----</p>
<p>제61조(납기)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p>	<p>(삭 제)</p>

현 행 ('95. 1. 1)	개 정
<p>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군수에 <u>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u></p> <p>제63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u>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u>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략) 5. <u>비과세 및 감면사유</u> 6. (생략) <p>제64조(과세대상지역) 영 제205조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읍 : <u>평창읍</u> 2. 면 :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p>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 ----- ----- <u>비과세 받고자</u>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5. <u>비과세 사유</u> 6. (현행과 같음) <p><u>< 삭제 ></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용평면, 진부면, 도암면 	

관계 법령 발췌서

□ 지방세법 제9조의 2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26조의 2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나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84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건축물
3. 삭제
4. 삭제
5.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6. 삭제.
7.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8.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3목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4. 사제
5. 별정우체국이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사적지 및 묘지
7.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각각 제외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안 번호	226
----------	-----

제출년월일 : 1995.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향교재산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는 군세감면조례에 의거 감면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나,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어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치 않고 일반세율로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함. (제10조 제2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p>	<p>제10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p> <p>① ----- ----- ----- ----- ----- -----</p> <p>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p>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9조

-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향교재산법 제2조

- (향교재산의 정의)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등산, 부동산 기타재산을 말한다.

□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

- 제23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과세표준 〉

〈 세율 〉

2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3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78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78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128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128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50억원 초과	1억1,128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8

제출년월일 : 1995.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95. 7. 1부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취임하게 되면서
- 지금까지 국가직공무원(4급)으로 되어 있던 군수 정원이 지방 공무원(정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 군 본청의 지방공무원 정원 1인을 증원하고
- 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 되면서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이 집행기관의 경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 의회사무기구의 경우 「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관한조례」로 二元化되어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도 아울러 반영토록 규정됨에 따라
 - 군의회사무과의 현 정원(11인)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군수 정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군 본청 정원 1인을 증원 하되, 선출직 단체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95. 7. 1부터 시행하도록 함. (안 제2조 및 부칙)

나. 군의회사무과 공무원 정원을 조례에 규정(안 제2조)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평창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청 : 212 인
2. 의회사무과 : 11 인
3. 직속 기관 : 99 인
4. 사 업 소 : 8 인
5.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243 인

제3조중 "본청" 다음에 "의회사무과"를 삽입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평창군의 본청·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본 청 : 211 명</u></p> <p>2. <u>직속기관 : 99 명</u></p> <p>3. <u>사 업 소 : 8 명</u></p> <p>4. <u>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243명</u></p> <p>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 평창군의 <u>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u>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 ----- ----- -----</p> <p>1. <u>본 청 : 212 인</u></p> <p>2. <u>의회사무과 : 11 인</u></p> <p>3. <u>직속 기관 : 99 인</u></p> <p>4. <u>사 업 소 : 8 인</u></p> <p>5. <u>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243인</u></p> <p>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 ----- <u>본청, 의회사무과, 소속기관 및 읍·면에</u> -----</p>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본청
2. 의회사무과
3. 직속기관
4. 출장소
5. 사업소
6. 자치구가 아닌 구
7. 읍·면·동 및 그 출장소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199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동의안

의안 번호	227
----------	-----

제출년월일 : 1995.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1994. 12. 21. 평창군의회에서 동의 의결된 1995.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등 변경계획안의 동의의결을 받고자 제안함.

2. 주요골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가로 집행하여야 할 취득, 처분 재산은 총 442건에 151,136㎡로서 취득은 군도 및 농촌도로확장 편입용지 8개소 272필 78,048㎡ 상수도 시설확장 1개소 2필 40,393㎡ 봉평도읍정비사업 편입용지 144필 14,602㎡, 평창경찰서 신축부지매입 교환 14필 15,120㎡와 평창 노성정, 방림 피로연장 건물2동 850㎡ 등 모두 434건 149,013㎡를 취득코저하며 매각은 개인들이 사유건물부지로 점유하고있는 소규모 재산 7필 2,003㎡와 건물1동 120㎡ 등 모두 8건 2,123㎡를 매각코자함.

3.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35조

나.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

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및 동시행규칙 제29조

총괄표 (7-1)

(단위:㎡, 천원)

구분			합계			95 당 초			95 1차 변경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계	토지	568	2,499,784	4,617,249	136	2,351,621	1,534,432	432	148,163	3,082,817
		건물	6	9,213	7,836,600	4	8,363	7,574,650	2	850	261,950
		기타									
독	1) 매입	토지	442	152,579	3,444,731	10	4,416	361,914	432	148,163	3,082,817
		건물	6	9,213	7,836,600	4	8,363	7,574,650	2	850	261,950
		기타									
	2) 교환	토지	126	2,347,205	1,172,518	126	2,347,205	1,172,518			
		기타									
3) 취득	토지										
기타	건물										
취득	기타										
처	계	토지	76	2,366,392	5,319,290	69	2,364,389	5,211,563	7	2,003	107,727
		건물	3	593	49,922	2	473	42,114	1	120	7,808
		기타									
	4) 매각	토지	23	39,512	4,137,445	16	37,509	4,029,718	7	2,003	107,727
		건물	1	120	7,808				1	120	7,808
기타	기타										
분	5) 교환 매각	토지	53	2,326,880	1,181,845	53	2,326,880	1,181,845			
		건물	2	473	42,114	2	473	42,114			
	철거	기타									
대부	토지	545	690,297		545	690,297					
	건물	5	555		5	555					
	기타	56	94,331		56	94,331					

'95 취득재산목록 (7-2)

(단위: m, 천원)

일련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 가 정 액	취 득 기 취 시	취 사 독 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 성명
	지 목	소 재 지	수 량				
	토지	432필지	148,163	3,082,817			
	건물	2등	850	261,950			
	기타						
1	토지	평창 후평리 563-3의 9	8,301	22,269	하반기	농촌도로확장 (후평-원당)	평창후평리54 박종희외 7명
2	"	미탄 한탄리 544-3의 22	5,752	32,590	"	군도확장 (한탄-마하)	미탄한탄리117 엄용주의 13명
3	"	방림 운교리 883의 50	10,950	19,108	"	농촌도로확장 (운교1리-3리)	방림운교리808 엄유복외 34명
4	"	대화 신리 284-3의 41	17,103	75,310	"	군도확장 (신리-마평)	대화 신리 79 김관영외 24명
5	"	대화 대화리 303의 5	1,433	8,598	"	농촌도로확장 (대화4리-7리)	대화 대화리 12 함종인의 4명
6	"	봉평 무이1리 241의 24	4,781	28,686	"	농촌도로확장 (무이1리-2리)	서울성북구동소 문동7가117-3 최창희외 23명
7	"	봉평 창동리 373-20의 143	14,602	1,740,248	"	봉평도읍정비 사 업	서울종로구송월 동1-44 오춘애외 143명
8	"	진부 척천리 110-1의 71	18,754	112,524	"	군도확장 (척천리)	진부척천리106 임응규외 70명
9	"	진부 상진부리 534-4의 1	40,393	66,612	"	상수도시설 확 장	서울강동구길동 산62 김상익외 1명
10	"	도암 차항리 32의 42	10,974	76,872	"	농촌도로확장 (차항리)	도암 차항리 김영찬외 32명
11	"	평창 하리 219-2의 13	15,120	900,000	"	경찰서신축부지 매 입 교 환	평창 하5리 김건하외 7명
12	건물	평창 하리 10	650	211,950	"	평창노성정	평 창 군 수
13	"	방림 방림리 1271-2	200	50,000	"	피로연장	"

95년도 매각대상목록 (7-4)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매각대상 수 량	과표또는 평 가 액	매 각 시 기	매 각 사 유	매수희망자 주소 성명
	지목	소 재 지	일단의수량					
계	토지	7필지	4,109	2,003	107,727			
	건물	1동	120	120	7,808			
	기타							
1	대	봉평창동리 289-3	318	318	6,900	하반기	지방재정법 제95조2항4조	봉평 창동리 안 호 준
2	전	도암횡계리 213-9	445	445	2,349	"	"	도암 횡계 6리 김 성 태
3	대	도암횡계리 325-127	299	254	51,816	"	"	도암 횡계 6리 김 정 기
4	대	도암횡계리 331-35	235	235	45,590	"	"	도암 횡계 6리 김 진 종
5	입	진부송정리 1316	2,415	164	311	"	"	진부 송정리 박 종 호
6	"	"	"	50	95	"	"	" 우 정 열
7	"	"	"	140	266	"	"	" 황 정 남
8	도로	" 2130-4	271	271	273	"	"	진부농업협동 조합 장
9	"	" 2131-4	126	126	127	"	"	"
10	건물	도암횡계리 331-35	120	120	7,808	"	"	도암 횡계10리 김 진 종

1995年度第1回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審 查 報 告 書

1995年 5月 12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回附 豫算案

가. 199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및 제출자 : 1995년 4월 29일 ,평창군수

나. 회 부 일 자 : 1995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95.5.11.상정)

○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95.5.12.의결)

3.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고창식)

- 1995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정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1,653백만원의 13%인 8,173백만원이 증가한 69,826백만원이며,
- 이중 일반회계가 7,418백만원, 특별회계가 75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4.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전문위원 신교선)

가. 일반회계 세입부문

- 세입은 총 7,41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증가되었음.
- 세외수입은 '94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광부담금 (군도10호선 도로확.포장사업 토지매입비)이 주세입임.
- 지방교부세는 대화체육관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이며,
-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비와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비이며,
-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사업 변경및 추가내시된 사업으로 주로 UR대비 농어촌투자사업비로 편성되었음.

나. 일반회계 세출부문

- 세출예산 총 7,418백만원은 경상비 965백만원, 자체사업비 2,067백만원 국도비보조사업 4,386백만원으로 대별되며,
- 자체사업주요내역은
경찰서부지매입비 420백만원, 군도10호선 용지보상비 460백만원
미탄쓰레기매립장설치 170백만원, 방림 방의동, 봉평 매지동천
소하천정비 300백만원, 취락구조개선사업 200백만원, 대화체육관
건립 150백만원, 기타 도로포장.교량 가설사업임.
- 국도비보조사업은
농산물유통센터 2,450백만원, 봉평도읍정비 213백만원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 720백만원, 1군1명품사업 200백만원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 200백만원, 부익,화장실개량 361백만원
등 주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임.
- 봉평소도읍정비사업비는 금년도 마무리 사업비로 1,930백만원
이 소요되나 당초예산 800백만원 1회추경 400백만원으로 향후
730백만원이 더 소요되어야 년내 완공될 것으로 판단됨.
- 경찰서부지 매입비는 당초예산에 480백만원 계상되었으나, 위치
변경에 따른 금회 추경에 420백만원이 계상되어 사전 충분한 협의가
없이 계획 되어 금번 추가계상되었다고 사료됨.
- 대화체육관건립계속사업비 승인건은 문화예술회관건립등 향후 많은
군비부담이 예상되어 우리군의 재정상태를 감안 국도비등 보조금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특별회계는 총 6개사업에 75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증가되었음.

- 증가 요인은 '94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세외수입(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으며,
- 상수도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이 추가소요되었고.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제정으로 금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수하리 마을길 포장사업)비로 30백만원이 계상 되었음.

5. 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

6. 討論要旨

【 없음 】

7. 審査結果

○ 원안에 대하여 「 이의 없음 」 을 의결

8. 少數意見의 要旨

○ 대화체육관의 계속비 승인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원확보 대책을 감안 집행부의 재원대책 확보를 촉구하고 승인함이 타당함.

9. 其他 必要한事項

가. 건의사항 : 없음

나. 기타특이사항 : 없음

첨부 : 1. 199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부.

2. 계속비사업조서 1부. 끝.

1995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224
----------	-----

제출년월일 : '95. 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요구합니다.

2. 제안주요내용

1995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요구액은 총 8,173백만원 일반회계 7,418백만원과 특별회계 755백만원이며

(세 입)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697백만원, 지방교부세 150백만원, 지방양여금 1,844백만원, 보조금 3,727백만원으로 되어있고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39백만원, 사업외수입 1,016백만원, 보조금 △ 300백만원 입니다.

(세 출)

일반회계의 편성은 인건비 59백만원, 물건비 354백만원, 이전경비 49백만원, 자본지출 6,485백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383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8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물건비 3백만원, 자본지출 328백만원, 융자 및 출자 323백만원 보전재원 30백만원, 기타 7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수 있다.

다만,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995년도 (1회 추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안)

예	산	총	칙
세	입	세	출
예	산	예	산

평 창 군

에 산 총 회

1995 년도 [1회추경]

• 제1조 :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임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서출 예산총액	임시차입 한도액
총 계	69,826,682	2,094,800
일 반 회 계	63,331,397	1,899,941
부 별 회 계	6,495,285	194,858
상수도특별회계	4,416,053	132,481
주택사업특별회계	724,873	21,746
의료보조기금특별회계	474,056	14,221
시마울소독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513,981	15,419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55,862	4,675
농공지구조정및관리사업특별회계	180,460	5,41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0,000	900

-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 1995년도 세부담행위는 별첨 '세부담행위조사'와 같다.
- 제4조 : 199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백만원으로 한다.
- 제5조 : 199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사와 같다.
- 제6조 : 1995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사'와 같다.
- 제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882,631천원으로 한다.

예 산 총 규 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구 분	예 산 액	전 (기 예)	년 (기 산 정) 액	중 △ 감
계		69,826,682		61,653,419	8,173,263
일	반 회 계	63,331,397		55,912,935	7,418,462
특	별 회 계	6,495,285		5,740,484	754,801
상	수 도	4,416,053		4,170,153	245,900
주	택 사 업	724,873		724,873	0
의	료 보 호 기 금	474,056		464,810	9,246
새	마을 소득 사업 운영 관리	513,981		253,528	260,453
지	소독 주민 생활 안전 기금	155,862		91,620	64,242
농	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180,460		35,500	144,960
발	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30,000		0	30,000
		0		0	0
		0		0	0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단위:천원)

구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별 회 계			
	예산액	구경비율(%)	건년도 예산액	중소감	예산액	구경비율(%)	건년도 예산액	중소감	예산액	구경비율(%)	건년도 예산액	중소감
세	69,826,682	100%	61,653,419	8,173,263	63,331,397	100%	55,912,935	7,418,462	6,495,285	100%	5,740,484	754,801
지방세	6,462,771	9%	6,462,771	0	6,462,771	10%	6,462,771	0	0	0%	0	0
세외수입	10,743,942	15%	7,992,094	2,751,848	5,710,257	9%	4,013,210	1,691,047	5,033,685	77%	3,978,884	1,054,801
경상직세외수입	4,701,967	7%	4,645,697	56,270	3,587,591	6%	3,570,510	17,081	1,114,376	17%	1,075,187	39,189
임시직세외수입	6,041,975	9%	3,346,397	2,695,578	2,122,666	3%	442,700	1,679,966	3,919,309	60%	2,903,697	1,015,612
지방교부세	24,361,000	35%	24,211,000	150,000	24,361,000	38%	24,211,000	150,000	0	0%	0	0
지방양여금	6,561,759	9%	4,717,751	1,844,008	6,561,759	10%	4,717,751	1,844,008	0	0%	0	0
보조금	18,985,050	27%	15,557,643	3,427,407	17,523,450	28%	13,796,043	3,727,407	1,461,600	23%	1,761,600	-300,000
국고보조금	11,305,104	16%	9,561,360	1,743,744	9,942,112	16%	8,198,368	1,743,744	1,362,992	21%	1,362,992	0
도비보조금	7,679,946	11%	5,996,283	1,683,663	7,581,338	12%	5,597,675	1,983,663	98,608	2%	398,608	-300,000
지정채권	2,712,160	4%	2,712,160	0	2,712,160	4%	2,712,16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0%	0	0
재산매각수입	2,712,160	4%	2,712,160	0	2,712,160	4%	2,712,160	0	0	0%	0	0
부담금	0	0%	0	0	0	0%	0	0	0	0%	0	0
계	69,826,682	100%	61,653,419	8,173,263	63,331,397	100%	55,912,935	7,418,462	6,495,285	100%	5,740,484	754,801
인건비	10,837,820	16%	10,778,488	59,332	10,825,580	17%	10,766,248	59,332	12,240	0%	12,240	0
물건비	8,281,610	12%	7,929,840	357,770	7,644,532	12%	7,290,062	354,470	643,078	10%	639,778	3,300
이건경비	5,399,362	8%	5,350,579	48,783	4,668,862	7%	4,620,079	48,783	730,500	11%	730,500	0
차분지출	42,322,947	61%	35,509,934	6,813,013	38,276,996	60%	31,791,663	6,485,333	4,045,951	62%	3,718,271	327,680
용자및술자	673,219	1%	349,724	323,495	0	0%	0	0	673,219	10%	349,724	323,495
보건채권	446,450	1%	416,872	29,578	127,051	0%	127,051	0	319,399	5%	289,821	29,578
내부거래	818,139	1%	435,201	382,938	818,139	1%	435,201	382,938	0	0%	0	0
기타	139,002	0%	150	138,852	87,606	0%	0	87,606	51,396	1%	150	51,246
예비비	902,133	1%	882,631	19,502	882,631	1%	882,631	0	19,502	0%	0	19,502